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1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8. 24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0. 8. 2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0. 9. 4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이유

-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하여 관리함에 개정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량 관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안 제3조)
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사항 의무화 (안 제6조 및 제7조)
다. 간이급수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시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과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수립(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간이상수도시설 폐지사유 발생시 협의회 의견수렴하여 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사용자로부터 간이상수도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개정안은 수도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급수인구 100인이상 2,500인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m³이상 500m³미만인 간이상수도과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 m³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과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의2에 동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환경부의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작성하여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회부되었는바
- 상위법 저촉여부 등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동조례 개정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전반적인 자구수정과 동 조례안 제12조(건강진단) 부문에서 간이 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대한 건강진단 대상자의 범위, 실시시기 등의 명시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 또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시 신속한 공급 대책(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등) 체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안 제20조 관리자의 교육을 어떤 방향에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 답 : 먹는 물의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임.
- 문 : 급수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시 신속한 공급대책은?
- 답 : 안 제13조에서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해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6. 토 론

- 안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제2항중 “자물쇠 장치”를 “잠금장치”로 한다.
- 안 제11조(시설의 폐지) 제2항중 “기록하여 보관하고”를 “기록하여 관리하고”로 한다.
- 안 제13조(관리비용)의 단서중 “예산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 안 제15조(계량기) 제2항중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를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로 한다.
- 안 제21조(관리의 위탁) 제2항중 “민간위탁” 앞에 “제1항의 규정에 의 한”을 삽입한다.
- 안 제22조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중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 붙임 :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심사결과

- 2000. 9.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 641 호
의결년월일	2000. 9. . (제 80 회)

의결사항	
------	--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안년월일	2000. 9. 4.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641
----------	-----

제안년월일 : 2000. 9. 4.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사유

-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용어의 간결화와 자구의 수정을 위함.

2. 주요골자

- 안 제5조 제2항중 “자물쇠 장치”를 “잠금장치”로 한다.
- 안 제11조 제2항중 “기록하여 보관하고”를 “기록하여 관리하고”로 한다.
- 안 제13조 단서중 “예산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 안 제15조 제2항중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를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로 한다.
- 안 제21조 제2항중 “민간위탁” 앞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한다.
- 안 제22조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중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3. 붙임 : 수정안 본문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3조제1항중 “자물쇠 장치”를 “잠금장치”로 한다.

안제11조제2항중 “기록하여 보관하고”를 “기록하여 관리하고”로 한다.

안제13조 단서중 “예산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안제15조 제2항중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를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로 한다.

안제21조제2항중 “민간위탁” 앞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한다.

안제22조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중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생략)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잠금장치 ----- -----</p>
<p>제11조(시설의 폐지) ①(생략) ②군수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1조(시설의 폐지) ①(현행과 같음) ②----- ----- 기록하여 관리하고 ----- -----</p>
<p>제13조(관리비용)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관리비용) ----- ----- ----- 예산의 범위 안에서 ----- -----</p>
<p>제15조(계량기) ①(생략)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p>	<p>제15조(계량기) ①(현행과 같음) ②-----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p>
<p>제21조(관리의 위탁) ①(생략)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관리의 위탁)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2조(시행규칙) -----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